



발행처 _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044)204-5797

인 쇄 _ 닥터조이 02)2771-1041

※ 책자의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2016

자연재난 피해주민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
정부지원 종합 안내서





C O N T E N T S

I . 사유시설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원	02
II .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	04
III . 주택피해자 등에 대한 의연금 지원	05
IV . 피해주민 간접지원(원스톱서비스)	07
V . 풍수해보험료 지원	19
VI .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	20
VII .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	21
VIII . 기타 지원 사항	23
IX .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	25



I. 사유시설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원

근거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,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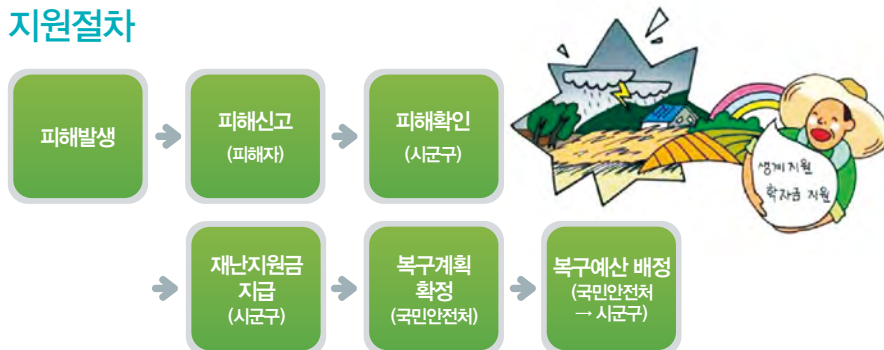
지원 대상·금액

- ① 세대주·세대원 중 **사망·실종자 및 부상자**가 있는 경우
 - 사망·실종 : 세대주 1,000만원, 세대원 500만원
 - 부상 : 세대주 500만원, 세대원 250만원
- ② **주택피해**(전파·유실, 반파, 침수피해)를 입은 경우
 - 주택전파·유실 900만원, 반파 450만원, 침수 100만원
 - ※ 주택피해자는 구호비 추가 지원(전파 480천원, 반파 240천원, 침수 56천원/1인당)
 - ※ 산출기초(8,000원/1인/1일, 전파 60일, 반파 30일, 침수 7일)
- ③ 주생계수단인 **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**에 **피해**를 입은 경우
 - ※ 주생계수단 :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%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
 - ※ 총 소유량의 50%이상 피해를 입은 농·어가 등은 생계지원비 및 학자금 추가 지원

신청방법

- 「자연재난피해신고서」를 작성 **읍·면·동사무소 10일 이내**에 관할 해당부서에 제출
- ※ 인명피해는 주소지,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

지원절차



피해신고요령

신고 기간과 대상은?

-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
- 주택, 축사, 비닐하우스, 어선, 인삼재배시설, 수산증양식 시설, 농경지, 가축, 어패류, 농작물
- 농·임·어·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
- ※ 주 생계수단이 공무원, 회사원, 상업 등 종사자는 제외

신고서 작성은 어떻게?

- 읍면동과 이·통장집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
-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
- 주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가족수 등 기입
-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
- ※ 신용불량 등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위임 지급 가능
-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(www.safekorea.go.kr)

제출 장소 및 접수는?

- 피해소재지 시·군·구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
- ※ 이장, 통장에게 전달 접수 가능

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운 분은?

- 부재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이·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
- 피해신고에 문의 사항은 **시군구 재난관리부서**



Ⅱ.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

응급구호세트(남/여) / 취사구호세트

응급구호세트(남) : 1인 기준

구 분	담 요	칫 솔	세면비누	수 건	화장지	베 개
규 격	200cm×150cm, 1.3kg 200cm×150cm, 0.7kg	일반용	100g	80cm×40cm	마용티슈	PVC 38cm×28cm×10cm
수 량	2장	1개	1개	2장	1개	1개

구 분	면장갑	간소복	면도기	속내의	양 말	매트	슬리퍼	귀마개	안대
규 격	반코팅	면폴리 혼 방	1회용	면	면	140cm×200cm 우레탄, 방수	대, 중, 소	우레탄	쿠션
수 량	1켢레	1벌	1개	2벌	2켢레	1개	1족	1개	1개
개별구호물품 치약(130g), 물티슈(60매), 생수(1.0ℓ) 1병									

응급구호세트(여) : 1인 기준

구 분	담 요	칫 솔	세면비누	수 건	화장지	베 개
규 격	200cm×150cm, 1.3kg 200cm×150cm, 0.7kg	일반용	100g	80cm×40cm	마용티슈	PVC 38cm×28cm×10cm
수 량	2장	1개	1개	2장	1개	1개

구 분	면장갑	간소복	속내의	양 말	매트	슬리퍼	귀마개	안대
규 격	반코팅	면폴리 혼 방	면	면	140cm×200cm 우레탄, 방수	대, 중, 소	우레탄	쿠션
수 량	1켢레	1벌	2벌	2켢레	1개	1족	1개	1개
개별구호물품 치약(130g), 물티슈(60매), 생수(1.0ℓ) 1병, 생리대 1조								

※ 의류(간소복·속내의) 크기에 따라 대(남105, 여100), 중(남100, 여95), 소(남95, 여90)로 구분, 대·중·소 구성 비율은 3:5:2로 함

취사구호세트 : 1세대 4명 기준

구 분	가스렌지	코 펠	수 저	세탁비누	세탁세제	주방세제	고무장갑	수세미	다용도가방
규 격	휴대용	4인용	sts	230g	1kg	500g	고급형	부직포	PE타포린
수 량	1개	1세트	4벌	1개	1개	1통	1켢레	2개	1개
개별구호물품 1세대당 쌀(10kg) 1포, 부식류(고추장, 간장, 된장, 김치 등 기타 부식류), 부탄가스 4개, 쌀군·표백제 1개									

※ 개별구호물품은 이재민 상황에 따라 즉석식품, 분유세트(분유·젖병), 기저귀, 모기약, 양수기(가슴대비), 쿨 스카프(폭염대비), 전기매트(한파대비), 응급의약품 세트(반창고 등 10종) 등 세트기준에 관계없이 지급 가능

응급구호세트(남)



응급구호세트(여)



취사구호세트



Ⅲ. 주택피해자 등에 대한 의연금 지원

근거법령

- 「재해구호법」 제26조, 「의연금품 관리·운용 규정」

지원 대상·금액

구 분	의연금(만원)	비 고
○ 사망·실종자(1인)		
• 세대주	최대 1,000	
• 세대원	최대 500	
○ 부상자(1인)		
• 세대주	최대 500	
• 세대원	최대 250	
○ 생계지원	최대 100	세대당 지급
○ 주택파손(동)		
• 전파·유실	최대 500	세대당 지급
• 반 파	최대 250	세대당 지급
• 침 수	최대 100	세대당 지급

※ 배분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의연금 지원 금액 결정

지원절차

- 피해주민 신고 후 지자체에서 의연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면 구호협회(배분위원회)에서 지원금액·지원 범위 등을 심의·의결한 후 이재민 개인별 계좌에 입금



※ 지원대상 재해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재해복구계획 수립이 확정된 재해

Ⅳ. 피해주민 간접지원 (원스톱서비스)

간접지원이란?

- 자연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각종 요금 감면, 세제 혜택 등을 지원

원스톱 서비스란?

- **한번의 피해신고만**으로 해당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도 간접지원 서비스를 받도록하는 서비스

근거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,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 및 제12조

지원개요

- **지원대상**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 가목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
- **지원내용** : 간접지원 13개 분야

-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① 건강보험료 경감 | ② 국민연금 납부예외 | ③ 통신요금 감면 |
| ④ 지방세 감면 및 납기유예 | ⑤ 국세 납세유예 | ⑥ 전기요금 감면 |
| ⑧ 도시가스요금 감면 | ⑨ 지역난방요금 감면 | ⑩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|
| ⑪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| ⑫ 상하수도요금 감면 | ⑬ 농기계수리 지원 |

지원절차



① 건강보험료 경감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

근거법령
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5조,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, 「국민연금법」 제91조, 시행령 제60조

대상·범위

건강보험료 경감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
- 인적피해와 물적피해 동시 발생시 6개월 경감(하나만 발생시 3개월)
※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~50% 경감

[건강보험료 경감률]

구 분	적용 기준		
	1등급	2등급	3등급
재난등급 (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)	1~5	6~55	56~100
경감률	50%	40~49%	30~39%

- ※ 건강보험료 경감은 월보험료 최대 50% 초과할 수 없음
- ※ 소상공인은 재난등급에 상응하는 피해금액에 따라 경감률 적용

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,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의거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
※ 피해발생월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납부 예외

지원절차



③ 전기요금 감면 ④ 통신요금 감면

근거법령
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9조

대상·범위

전기요금 면제 및 감면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전기요금 면제 및 감면

- 멸실된 건축물(주택 등) : 1개월분 전기요금 면제
- 침수 및 파손 건축물 : 1개월분 전기요금의 50% 감면(주택용은 100% 감면)
- 전기요금 납기연장 : 멸실, 침수 및 파손건축물에 대해 1개월 납기연장
- 이재민대피장소 6개월 요금 감면(지자체가 인정하는 시설물에 한함)
- 건축물 멸실 및 파손으로 인한 전기 재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면제

통신료 감면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유선통신요금 감면
- 1~90등급 피해주민에 대해 세대당 1회선 1개월 최대 12,500원
※ 감면 내용(이동전화 기본료 일부감면 등)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

지원절차



⑤ 국세 납세유예 ⑥ 지방세 감면

근거법령

- 「국세기본법」 제6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85조의2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6조, 제80조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, 제92조

대상·범위

- 재난피해자 중 국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하는 자 및 이미 고지 받은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
- 재난피해로 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


지원내용

국세 납세유예

- **(신고·기한연장)** 신고·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있는 경우 신고·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
- **(징수유예)**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기 고지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

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

- **(감면)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 감면
- **(납기유예)** 납세자의 천재지변, 사변, 화재, 도난,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위독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기한연장(6개월에서 최대 1년)
- **(면제)** 재난피해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·선박·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등

지원절차



⑦ 재해 복구자금 융자

근거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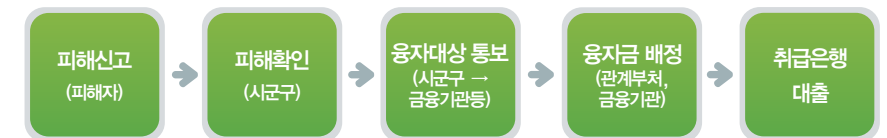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
-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4조
-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

융자 대상 및 조건

소관부처	피해시설	취급은행	상환기간	이율(고정금리)
농식품부	농경지, 농작물등	농협	5년 거치 10년 상환	연리 1.5%
해양수산부	어선, 수산생물 등	수협	5년 거치 10년 상환	연리 1.5%
산림청	산림작물, 시설 등	산림조합	5년 거치 10년 상환	연리 1.5%
국토교통부	주택 (전파, 유실, 반파)	농협, 우리, 국민, 기업, 신한, 하나	3년 거치 17년 상환	연리 2.5% (변동금리)
중소기업청	소상공인	일반은행	2년 거치 3년 상환	연리 2.5%
	중소기업	중소기업진흥공단	2년 거치 3년 상환	연리 2.4%

※ 재해복구(주택, 비닐하우스) 융자금 지원시 풍수해보험·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독려(상환 기간까지 유지)

지원절차



7-1 재해 농가·어가·임가 경영자금 지원

근거법령

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63조, 「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」, 「축산법」 제3조, 「농축산 경영자금 운용 규정」
- 「수산업법」 제86조, 「영어자금 운용요령」
-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」

근거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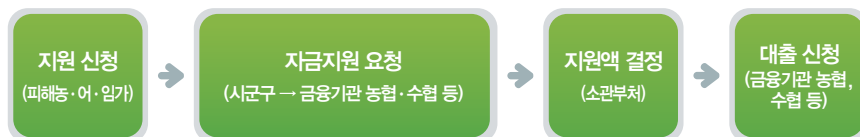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, 「자연재해대책법」,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등에 의한 재해피해 농·어·임가



지원조건 및 금액

소관부처	지출대상	상환조건	
		상환기간	이율
농림축산 식품부	(농업경영자금) 10백만원 이내 (축산경영자금) 10백만원 이내 (재해대책경영자금) 장관이 결정한 금액 이내	1년간 (1년 연장 가능) * 다만, 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농 가는 3년 연장가능	연 3.0%
해양수산부	자담분(재해대책본부 심의·확정)+피해복구비 의 20% 이내, 영어자금 소요액의 15% 이내 (지방자치단체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자)	1년 (1회 연장 가능)	연 3.0%
산림청	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용자 부담률 이외 재해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	2년 거치 3년 상환	연 3.0%

지원조건 및 금액



7-2 재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

근거법령

-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1조
-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
- 「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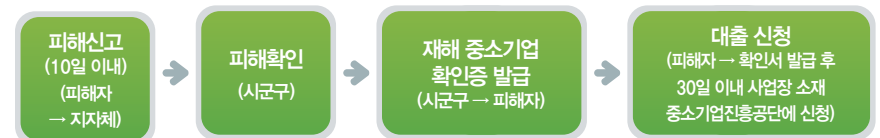
지원대상

- 자연재해로 직접 피해*를 입은 중소기업
*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, 생산설비, 원재료, 완제품 피해에 한함

지원내용
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※ 신용대출의 경우, 최대 3년 이내(거치기간 1년)
-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
- 대출금리 : 연 2.5% 고정금리
※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특별보증(90% 보증, 수수료 0.5%)

지원절차



※ 피해기업에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희망시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재해특례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



7-3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

근거법령

-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1조
-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
- 「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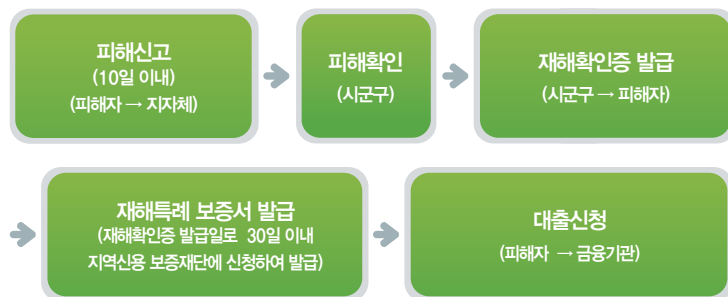
지원대상

- 자연재해로 직접 피해*를 입은 소상공인
- *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, 생산설비, 원재료, 완제품 피해에 한함

융자조건
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- 대출한도 : 7천만원
 - 대출금리 : 연 2.5% 고정금리
- ※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(100% 보증, 수수료 0.5%)
-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수수료 0.1%

지원절차



※ 순수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의 경우
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대출



8 도시가스 9 지역난방요금 감면

근거법령

-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(산업부), 천연가스공급규정(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)
- 열공급규정(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)

대상·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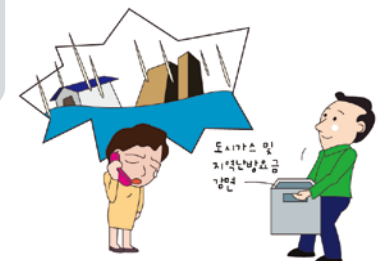
도시가스요금 감면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주택피해자에 대하여 요금 감면
- ▷ (취사용) 전파·반파·침수주택 1,680원
- ▷ (취사·난방용) 전파 12,400원, 반파·침수 6,200원

지역난방요금 감면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기계실(열사용시설)의 멸실·파손·침수로 인하여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요금 감면
- 열공급을 받지 못하는 날로부터 열공급을 재개하는 전일까지 해당일수에 대하여 기본요금 전액 감면

지원절차



⑩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

근거법령

- 「보훈기금법」 제5조, 재해위로금 지급 규정 제7조

대상·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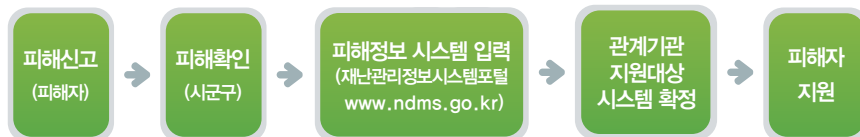
-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급

피해구분	세목 등	재해위로금 지급기준	지급액 (만원)
인명 피해	사망(실종)	사망 또는 실종	500
	부상	진단서 상 14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	30
	※ 동일 가구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(실종)자 추가 1인당 100만원 및 부상자 추가 1인당 10만원씩 부가 지급		
주택 피해	전 파	기둥·벽체·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	500
	반 파	기둥·벽체·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	250
	침 수	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	100
	※ 본체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, 빈집,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, 건축 중인 주택은 제외		
기타 재산 피해	대규모	피해금액이 1,000만원 초과인 경우(재난등급* 1~80등급)	50
	소규모	피해금액이 30만원 초과 1,000만원 이하인 경우(재난등급 81~100등급)	20
공동이용 시설피해	대규모	피해금액이 1,000만원 초과인 경우(재난등급 1~80등급)	500
	소규모	피해금액이 500만원 초과 1,000만원 이하인 경우(재난등급 81~90등급)	250

※ 보훈처장(지청장)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(1개월 연장 가능)

※ 인명·주택 및 기타 재산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인명·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원

지원절차



⑪ 상하수도요금 감면 ⑫ 지적측량수수료 감면

근거법령

- 「수도법」 제38조, 「하수도법」 제65조, 지자체 상하수도 조례
- 측량「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106조,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(국토부 예규)

대상·범위

상하수도요금 감면

-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중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자
- 평균사용량의 초과분 지원, 전액면제 등 **시·군·구별 조례에 따라 다름**
※ 지자체 조례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한 경우 지원 가능

지적측량수수료 감면

-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 시 지적측량이 필요한 자
※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지원되나 원스톱으로 지원(재난 발생일로 2년이내)
-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**지적측량시 수수료 50% 감면**

지원절차



⑬ 농기계수리 지원

지원근거·기준

- 없음(민간자율 지원)

처리기관

- 주관·처리기관 : 농기계회사, 시·군·구 농업부서
- 협조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, 국민안전처, 시·군·구 재난부서
 - (농림축산식품부) 농기계회사에 지역별 순회 서비스센터 운영 협조 요청
 - (시·군·구 재난부서) 피해신고 시 안내, 수리업체 연락체계 구축·홍보

지원대상

-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중 농기계 수리가 필요한 사람

처리시기

- 즉시 시행
 - ※ 사전 농기계회사·관내수리업체와 협력체계가 구축된 경우 가능

처리방법



V.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

근거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6조
- 「풍수해보험법」 제7조



대상·범위

- **지원대상** : 주택(동산 포함), 온실(비닐하우스 포함) 보험가입자
- **대상재해** : 태풍, 호우, 홍수, 해일, 강풍, 풍랑, 대설, 지진
- **지원규모** : 총 보험료의 55~92% 지원
 - ※ 일반 55~92%, 차상위계층 76~92%, 기초생활수급자 86~92%
- **참여보험사** : 동부화재, 현대해상, 삼성화재, KB손보, NH농협손보

신청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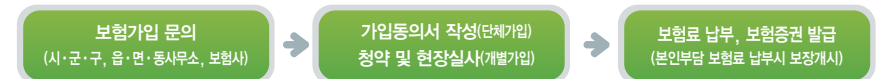
단체가입(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)

- 주택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풍수해보험 가입창구 문의 및 가입동의서 제출

개별가입(주택 및 온실 소유자)

- 풍수해보험 5개 참여보험사에 문의 및 가입신청
 - ※ 문의전화(02-2100-5103~7) / 5103(동부화재), 5104(현대해상), 5105(삼성화재), 5106(KB손보), 5107(NH농협손보)

가입절차



지급절차



VI. 농어업재해보험료 정부지원

근거법령

-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 제19조

지원 대상·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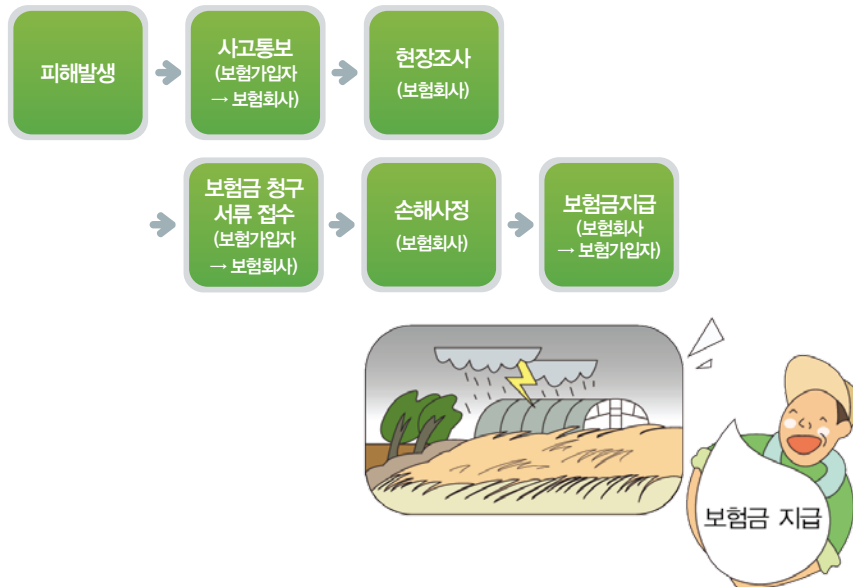
- 대상재해 : 태풍, 호우, 우박 등 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 등
- 지원대상 : 보험목적물(농작물 46, 가축 16, 양식수산물) 가입자
- 지원금액 : 총 보험료의 50% 지원(국고 보조기준)
- 지원주체 : 농림축산식품부·해양수산부 및 시·도, 시·군·구

신청방법

- 보험가입 대상시설물 소재지 관할 농협(농작물·가축보험), 수협(양식수산물보험), LIG 컨소시엄(가축보험)에 보험가입 청약

※ 가입문의 전화 : 농협 1644-8900, LIG 02-6900-3427, 수협 02-2240-2999

지급절차



VII.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

근거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2
- 「재해구호법」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1항



지원대상

-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
- ※ 피해자 가족, 목격자, 수습복구활동 참여자 등 재난 간접피해자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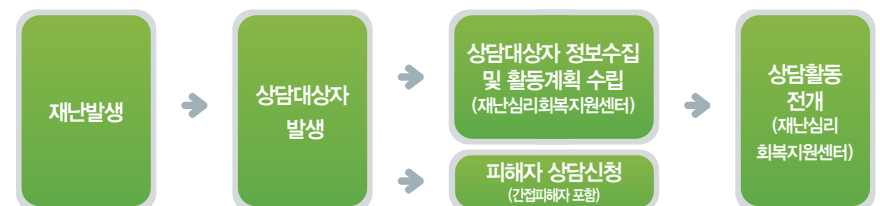
지원내용

-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신적·심리적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외상후 스트레스장애(PTSD) 진행을 예방
- ※ 정신·신경 의학적 치료분야는 보건·의료분야로 연계

지원 및 신청방법

- (지원) 시·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상담대상자 발생 시 조기 상담활동 전개
- (신청) 인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전화, 방문 상담신청

지원절차



※ 재난심리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상담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.

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연락처

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연락처

연번	센터명	연락처	주소	비고
1	서울특별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2-2181-3105	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45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	
2	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51-801-4070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	
3	대구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53-550-7117	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7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	
4	인천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32-810-1334	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함박외로 220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	
5	울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52-210-9521	울산광역시 중구 성안8길 71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	
6	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31-230-1636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	
7	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33-255-9597	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	
8	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43-262-7114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	
9	대전·세종·충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42-220-0144	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 대한적십자사 대전·세종·충남지사	
10	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63-280-5838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63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	
11	광주·전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62-523-0545	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21 대한적십자사 광주·전남지사	
12	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53-250-9835	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16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	
13	경상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55-278-2725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	
14	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64-758-3502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봉로 7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	

※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(044-204-5819) 및 시·도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가능

VIII. 기타 지원 사항 (초등돌봄교실 운영)

근거 법령

- 초·중등교육과정 제2013-7호(교육부 고시)
- 「2016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」(17개 시·도 교육청)

지원개요

- 재난과 관련한 초등학교 휴업 중에도 학교 여건 및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을 정상 운영하여 방과 후 돌봐주는 서비스 제공

지원대상 및 내용

- **오후 돌봄**
맞벌이, 저소득층,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1~2학년 학생(방과후~17시까지)
- **저녁 돌봄**
오후 돌봄 후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(17시~22시)
- **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**
3~4학년 맞벌이, 저소득층,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

비용부담

- 교육비 지원대상은 전액무상, 그 외 학생은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급·간식비 개인 부담

주요 돌봄 활동

- **(단체활동)** 다양한 예체능,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
- **(개인활동)** 숙제, 일기쓰기, 독서, 기타 활동 등

신청방법

- 아이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문의 신청

(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연기)

근거 법령

- 「병역법」 제61조,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29조
- 「병역법」 제49조, 「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」 제35조

지원대상

- **특별재난지역 내 재난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중** 징병검사, 재징병검사, 현역병(사회복무요원 포함) 입영(소집)일자가 결정된 경우로서 의무 이행기일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
 - ※ 자원봉사자 등 재난수습 지원인력도 가능
-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예비군
 - ※ 국방부에서 지원을 결정할 경우 가능

지원내용

- 60일 범위 내에서 징병검사, 재징병검사, 현역병(사회복무요원 포함) 입영(소집)일 연기
 - ※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, 지방병무청장이 60일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의무 이행기일 연기 가능
- 당해연도의 병력동원 훈련 면제(병무청)
- 당해연도의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(국방부)

신청절차



IX.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

Q1 피해신고 기간은?

- A.**
-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사유시설 피해자는 해당 읍·면·동사무소에 **10일 이내에 신고** 해야 합니다.
 - **장기여행·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**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 - ※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Q2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?

- A.**
- **시설피해**는 시설물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에 제출
 - **인명피해**는 주민등록 주소지에, **어선**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.
 - ※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(www.safekorea.go.kr)



Q3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?

- A.**
- 반파 미만의 소규모 주택피해, 어선,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
 - 상가 및 상품, 가재도구, 농기계, 자동차 등산
 - 무허가시설, 농림축산식품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, 수산증·양식시설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이며,
 - 다만, 주택은 건축 허가·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임.
 - ※ 무허가·신고 주택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구할 경우에는 지원함

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항목

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항목

지원항목	지원기준	주관 / 처리기관	협조기관	근거법
건강보험료 경감 특별	재난등급(소상공인은 피해금액)에 따라 건강보험료 30~50% 경감 (3개월) * 인적·물적피해 동시발생시 6개월	국민건강 보험공단	보건복지부, 국민안전처	국민건강보험법 제 75조 보험료 경감고시 (복지부) 제7조
국민연금 납부예외	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예외	국민연금공단 (지사)	보건복지부, 국민안전처	국민연금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
통신요금 감면 특별	1~90등급 피해주민에 대해, 세대당 1회선 1개월 최대 12,500원 (기본원칙) *통신사 상황에 따라 협의·조정될 수 있음	SKT KT LGU+	미래부, 국민안전처	전기통신사업법 제 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, 특별재난 지역 지원기준(통신 사업자연합회)
지방세 감면	감면, 면제, 납기유예 재산세 등 일괄감면 및 납기연장 (최장 6개월) 대체취득시 취·등록세 면제	행정자치부/ 시·군·구 세무담당부서	시·군·구 재난부서	지방세기본법 제26조,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, 제92조 등
국세 납세 유예	징수유예, 납기연장, 체납처분유예 - 소득세, 법인세, 부가세 등 - 최장 9개월 연장	국세청 / 지방국 세청·세무서	국민안전처	국세기본법 제6조 및 국세징수법 제15조, 법인세법 제58조 및 소득세법 제58조
전기료 감면 특별	건축물 피해 전기요금 감면 - (멸실)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면제 - (침수) 1개월분의 50% 면제	한국전력공사	시·군·구 재난부서	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(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)
복구자금 융자	피해시설	취급 은행	상환기간	이율
	농경지, 농작물 등	농협	5년까지 10년상환	연리 1.5%
	어선, 수산 생물 등	수협	5년까지 10년상환	연리 1.5%
	산림직물, 시설 등	산림 조합	5년까지 10년상환	연리 1.5%
	주택	농협 등	3년까지 17년상환	연리 2.5%
	소상공인	일반 은행	2년까지 3년상환	연리 2.5%
	중소기업	중소기 업진흥 공단	2년까지 3년상환	연리 2.4%
	국토·농림· 해수부, 산림· 중기청 / 시·군·구 주택·농업· 어업·산림· 경제부서 / 지방중소 기업청 / 금융기관			농어업재해대책법, 재난구호 및 재난복 구비용 부담기준 등 에 관한 규정, 중소기업 진흥에 관 한 법률 제61조, 재 해중소기업 지원지침 (중기청 고시)

지원항목	지원기준	주관 / 처리기관	협조기관	근거법
도시가스 요금 감면 특별	주택피해 유형별(전파, 반파, 침수) 1개월분 정액 감면 지원 - (취사용) 전파·반파·침수 1,680원 - (취사·난방용) 전파 12,400원, 반파·침수 6,200원	일반도시가스 사업자 / 한국가스공사	산업자원부, 국민안전처	특별재난지역 도시가 스요금 경감지침 (산업부) 천연가스공급규정 (가스공사 내부규정)
지역난방 요금 감면 특별	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- (기계설 멸실·파손·침수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) - (열공급 중지일~재개전일 기본요금 전액 감면 지원)	한국지역 난방공사	산업자원부, 국민안전처	열공급규정 제26조 (한국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)
상하수도 요금 감면	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 - (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) *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기준 다름	환경부 / 시·군·구 재난부서	시·군·구 재난부서	수도법 제38조, 하수 도법 제65조, 지자체 상수도 급수· 하수도 사용조례
지적측량 수수료 감면	지적측량 수수료 50% 감면 - (복구를 위한 부지 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)	한국국토 정보공사	국토교통부, 국민안전처	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(국토 부 예규)
보훈대상 위로금 지원	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사망·주택전파 : 500만원 재산 1,000만원 이상 피해 시 50만 원 등 * 원스톱으로 지원하거나 피해사실확 인서 제출 시 지원	국가보훈처 / 지방보훈관서	국민안전처	보훈기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 조, 재해위로금 지급 규정(보훈처 훈령)
농기계 수리지원	농기계 수리 필요한 경우 유·무상 수리 * 민간자율지원	농기계회사 / 시·군·구 농업부서	시·군·구 재난부서	관계법령 없음 (민간 자율 지원)

※ **특별** : 특별재난지역에만 지원

Memo



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light teal background and horizontal white lines, intended for writing a memo.

